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6-95
----------	-------

제출년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폐지사유

- 상위법 개정시 관련조항 삭제됨에따라 별도의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 없음.
- 2002.11.1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재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항이 없고, 예산문제로 일반회계 출연도 하지 않으며 장기간 운용되지 않고 있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함

3. 폐지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9. 8 ~ 2016. 9.28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6.1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및이용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이용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